

2019. 10. 18. 10:00

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 화원·옥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여성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 수요와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증축하여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 또한, 군유재산인 단층의 물류창고가 입지한 부지에 여성·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화원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설화명곡역 역세권 지역에 유동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효과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향후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만족도 제공 및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 위 치 :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 기 간 : 2019. ~ 2021.
- 규 모
 - 대지면적 : 651㎡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연면적 2,600㎡ 정도)
- 사 업 비 : 8,400백만원
- 시설배치(안)
 - 지상5층 ~ 지상7층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 지상2층 ~ 지상4층 : 여성문화복지센터 강의실
 - 지상1층 : 로비, 휴게공간 등
 - 지하1층 :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 위 치 : 구지면 도동리 34번지 외 7필지
- 기 간 : 2019. 10. ~ 2019. 12.
- 면 적 : 2,639㎡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구지면 도동리 34번지 일원
- 면 적 : 32,983㎡(81필지)
- 기 간 : 2016. 3. ~ 2021. 12.
- 사 업 비 : 9,731백만원(국비 5,000, 시비 2,144, 군비 2,587)
 - 공사비 6,716 설계비 428 토지보상비 2,587(21필지, 5,953㎡)
- 사업내용
 - 건축물 : 조선5현역사관(1동), 서원스테이(4동), 서원문화관(1동), 휴게음식점(2동), 관리사무소(1동), 화장실(1동) 등
건축면적 511.96㎡
 - 외부경관 정비 : 주차장 이설, 수변탐방길 조성 등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붙임 :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19 (88)	237,099.19	52,427,231	2 (8)	5,239	8,579,766	21 (96)	242,338.19	61,006,997
	토지	8 (87)	209,667.2	8,116,206				8 (87)	209,667.2	8,116,206
	건물	3	3,309.35	2,567,139				3	3,309.35	2,567,139
	2.교환									
3.기타	토지	1 (1)	1,488	193,886	1 (8)	2,639	179,766	2 (9)	4,127	373,652
	건물	7	22,634.64	41,550,000	1	2,600	8,400,000	8	25,234.64	49,95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1	모	잡	논공읍	금포리	1305-1	585	191,997,000	2019.2.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 308/1102 (잠원동, 신반포 8차 아파트)			2018. 12월 의회 의결
2	진	잡	논공읍	금포리	1305-2	1,081	354,784,200						
3 (기타)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4	66	36,234,000	2019.1. ~ 12.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2018. 12월 의회 의결
	대	장	논공읍	금포리	산29-11	187	1,589,500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2,662	1,126,292,200						
	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3	978	435,601,200						
	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0	66	29,396,400						
	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1	20	8,908,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3	411	172,209,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10	20	8,380,000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03	780	226,200,0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 (기타)	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873	365,787,000	2019.1. ~ 12.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달성군	2018.12월 의회의결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8	437	175,499,200					
	장	장	논공읍	금포리	1308-3	1,189	498,191,000					
	임	장	논공읍	금포리	산34	444	186,036,000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9	571	143,035,500					
	잡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3	1	741,000					
	잡	잡	논공읍	금포리	2394-22	34	14,246,000					
	묘	잡	논공읍	금포리	1305-1	585	191,997,00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305-2	1,081	354,784,200					
	4	구	구	유가읍	용리	836	469					
5	구	구	유가읍	용리	842	1,924	1,404,000					
6	구	구	유가읍	용리	861	2,764	145,500,000					
7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5	21,593	847,375,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8	104	140,4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8.12월 의회의결
9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9	98	132,300			"	"	
10	답	답	유가읍	용리	1	367	3,926,900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 2길 37	유가사	
11	잡	잡	유가읍	용리	2	160	3,552,000			"	"	
12	답	답	유가읍	용리	2-1	861	9,212,700			"	"	
13	답	답	유가읍	용리	6	264	2,824,800			달성군 유가읍 못안길 102	박일용	
14	답	답	유가읍	용리	9	1,044	12,319,200			"	"	
15	답	답	유가읍	용리	10	152	1,626,400			"	"	
16	답	답	유가읍	용리	11	208	2,225,600			"	"	
17	답	답	유가읍	용리	12	407	4,354,900			"	"	
18	답	답	유가읍	용리	13	162	1,733,400			"	"	
19	답	답	유가읍	용리	14	304	3,252,800			"	"	
20	임	임	유가읍	용리	18-3	359	5,313,200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 인원공파 달성문회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1	답	답	유가읍	용리	29	2,430	352,350,0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성낙언	2018.12월 의회의결
22	답	답	유가읍	용리	29-2	1,139	165,155,000			경남 창원시 대정로 79 성원1차아파트 113-103	김재선	
23	답	답	유가읍	용리	29-3	1,456	211,120,000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 101동 1501호(매호동 한일유엔아이)	김상식	
24	답	답	유가읍	용리	30	2,089	178,609,500			달성군 유가읍 용리 55	윤태식	
25	답	답	유가읍	용리	31	2,618	223,839,000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7 대곡사계절타운 304-1403	조진섭	
26	답	답	유가읍	용리	31-1	989	121,548,100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 3-13	정재인	
27	답	답	유가읍	용리	32	1,917	30,672,00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28	답	답	유가읍	용리	33	264	4,303,2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김외학	
29	답	답	유가읍	용리	34	1,428	23,276,4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김외학	
30	답	답	유가읍	용리	35	3,074	38,396,800			대구 수성구 노변공원로 7길 11-6	청주정씨 감정공파 경산종중	
31	답	답	유가읍	용리	36	172	2,803,600			-	최우춘	
32	답	답	유가읍	용리	37	2,407	27,177,900			대구 수성구 만촌로 20길 32	이영우외1명	
33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	1,791	1,934,280			달성군 현풍읍 증리길 33-9	김해김씨 달문공파 중중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4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3	198	213,84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달성군 현풍읍 중리 133	김해김씨달 문공파종중	2018.12월 의회결
35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1	192	207,360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1 건오힐타워 401호	김영일	
36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3	6,200	873,600			대구 달서구 상화로 380, 302동 611호(상인동, 장미아파트)	박성영	
37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15	27,128	14,492,500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0	박소현외2명	
38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1	3,969	10,875,060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손삼출외2명	
39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6	136,860	16,306,158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성달용외1명	
40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2	86	92,88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1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3	340	421,60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2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4	7,384	8,565,44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정원외1명	
43	도	도	유가읍	용리	산17-5	173	605,50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정원	
44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4	1,753	2,068,540			대구 남구 명덕로26길 53-3	임은경외1명	
45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	17,022	1,207,612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9, 2107동 2001호	배중호	
46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8-4	13,759	8,355,120			대구 동구 동부로32길 99, 3동 408호(신천동, 효신아파트)	배명호	

연번	지 목		제 안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개소)	산출가액(원) (분묘보상액 × 개소)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개소)						주 소	성 명	
47	임	임	유가읍	산18-5	용리	3,582	401,184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	강남산업 주식회사	2018.12월 의회의결
48	임	임	유가읍	산18-6	용리	1,225	991,025			"	"	
49	임	임	유가읍	산19-1	용리	12,396	9,686,200			대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의원 공파달성문화	
50 (표지)	답	답	유가읍	32	용리	3개소	10,513,35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임	임	유가읍	산2-21	용리	1개소	3,504,450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손삼출외1명	
	임	임	유가읍	산17-16	용리	1개소	1,107,790			-	-	
	임	임	유가읍	산2-3	용리	1개소	1,107,790			-	-	
	임	임	유가읍	산17-1	용리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읍	산16	용리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읍	산17-8	용리	4개소	14,017,800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6, 화성파크드림 212동 1403호	김성곤	
	임	임	유가읍	산17-14	용리	3개소	10,513,350			"	"	

※ 분묘보상액 산정기준 : 2018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8. 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시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1 (건물)	종교	종교	유기읍	용리 산1-2	2,605	23.04	1,000,000,000	2019.6.	종각·범종		달성군	2018.12월 의회의결
52 (건물)	종교	종교	유기읍	용리 산1-3	810	1식	400,000,000		일주문		달성군	
53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59	1,640	1,640	538,412,000	2019.1.~ 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2018.12월 의회의결
54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0	357	357	119,595,000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79	달성군 농회	
55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1	172	172	53,010,4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6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2	542	542	181,57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7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1	109	109	3,270,000	2019.1.~ 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대구 북구 칠성동 404	곽치만	2018.12월 의회의결
58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3-2	202	202	18,402,2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3-3	8,797	8,797	409,060,5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60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4	235	235	7,050,000			경북 구미시 인동 46길 6 부영아파트 603-1201	곽대호	
61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5	783	783	23,020,200	2019.1.~ 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 캐슬골드파크 1115-1202	유창식	2018.12월 의회의결
6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8	2,486	2,486	74,58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63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9	2,294	68,820,000	2019.1.~ 2. 현풍교통문화파크 조성	2018.12월 의회의결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64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0	3,124	93,720,000			달성군 현풍읍 지리	곽성용	
65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1	638	16,715,6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6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2	813	23,170,5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67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3	1,797	62,895,0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8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3-1	8,634	23,940,000			-	국 (건설부)	
6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4	258	7,353,0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70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5	258	7,353,0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71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6	826	31,476,600			대구 남구 현충로 39길 84	하원호	
7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7	36	1,371,600			-	국 (건설부)	
73 (건물)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59	356.44	20,317,08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0	207.74	11,841,18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1	108.8	6,201,60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2	144.37	8,229,09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4	전	전	화원읍 명곡리	36	1,319	686	100,156,000	2019.7. 화원명곡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및 진입도로조성	2018.12월 의회의결	대구 달서구 상인로 26안길 14	박재영	
75	전	전	화원읍 명곡리	37	369	369	53,874,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길 68	김강현	
76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3-1	689	689	100,594,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전병태	
77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3-2	1,724	1,724	251,704,000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4	박외갑 외 1	
78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4	855	855	124,830,000	영동김씨대 구파중외 1	2018.12월 의회의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전병태	
79	임	임	화원읍 명곡리	산12-1	182,794	2,411	5,545,300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1길 58-7		
80	대	대	하빈면 묘리	635	1,488	1,488	193,886,400	2019.3. 육신사공영 주차장 조성	2018.12월 의회의결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중무	
81	대	대	하빈면 묘리	636	2,352	2,352	297,528,000			대구 동구 동부로 34길 64 나동 107호	박진우	
82	대	대	하빈면 묘리	636-1	200	200	25,300,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중무	
83	답	답	화원읍 본리리	1296-2	59	59	2,938,200	2019.7.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2018.12월 의회의결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곽경애	
84 (기타)	임	임	화원읍 본리리	1314	6,883	1,040	1,995,000,000 (건축비)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7,310,000	2018.10. ~2019.6.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33길 38	김길동	2018.12월 의회의결
86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14,34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574	김태욱	
8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10,504,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7,74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9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38,052,4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35,55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영식	
9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52,459,9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6,142,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35,0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한용	
9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69,153,00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5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39,923,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24,24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167,362,000	2018.10. ~2019.6.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2018.12월 의회의결
9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277,057,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9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72,4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100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630,323,5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1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87,29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196,312,000			대구 수성구 신찬동로 84길 47	김운화	
103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74	46,376,000			대구 수성구 신찬동로 84길 47	김운화	
10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57,833,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10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189.6	79,058,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56	1,264.1	238,593,25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8	김운동외3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330.2	69,32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2-3	김정자외1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572	110,82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12	김운화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소제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06 (건물)	대	대	옥포읍	기세리	414.6 (연면적)	414.6 (연면적)	1,500,000,000 (건축비)	2019.7	낙경청 선비문화 체험관 조성		달성군	2019. 3월 의회 의결	
107 (건물)	대	대	현풍읍	상리	942 (연면적)	942 (연면적)	2,800,000,000 (건축비)	2019	달성문화원증 축		달성군		
108	대	대	하빈면	묘리	1,488	1,488	193,886,400	2019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박종무		
109	임	임	옥포읍	기세리	55,636	55,636	68,988,640	2019.7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 201동 1902호 (남산동, 남산후면시아2단지)	석병호	2019. 6월 의회 의결	
110	장	장	구지면	예현리	7,598.2	7,598.2	1,892,711,620	2019.7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확장이전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7번길 34 시화공단 1나 309호	주식회사 영환		
111 (건물)	장	장	구지면	예현리	1,452	1,452	525,551,400	2019.12		"	"		
112 (건물)	장	장	구지면	예현리	900 (연면적)	900 (연면적)	1,800,000,000 (건축비)	2019.12	화석박물관 건립		달성군		
113 (건물)	체육	체육	유가읍	상리	4,612 (연면적)	4,612 (연면적)	19,385,000,000 (사업비)	2022.1			달성군		
114 (건물)	체육	체육	유가읍	상리	5,358 (연면적)	5,358 (연면적)	13,000,000,000 (사업비)	2021.12	테크노스포츠 센터 건립		달성군	2019. 6월 의회 의결	
115	전	전	현풍읍	지리	430	430	37,840,000	2019.8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대구 달성군 현풍읍 지동1길 43 (지리, 한원당고택)	김백용		
116	임	임	현풍읍	지리	1,632	1,632	143,676,000			"	"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설	소 재 지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주 소					성 명		
1 (건물)	계						8,579,766,90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56-15	2,600 (연면적)	2,600 (연면적)	8,400,000,000 (사업비)	2021.	달성군 여성문화 복지센터 증축		달성군	중축
	2	전	전	구지면 도동리	34	426	426	7,795,800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도동서원	기부채납
	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34-1	20	20	366,000				
	4	도	도	구지면 도동리	34-2	22	22	402,600				
	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35-1	402	402	7,356,600				
	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1	95	95	3,686,000				
	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2	60	60	4,170,000				
	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1-4	7	7	271,600				
	9	도	도	구지면 도동리	56	1,607	1,607	155,718,300				

위 치 도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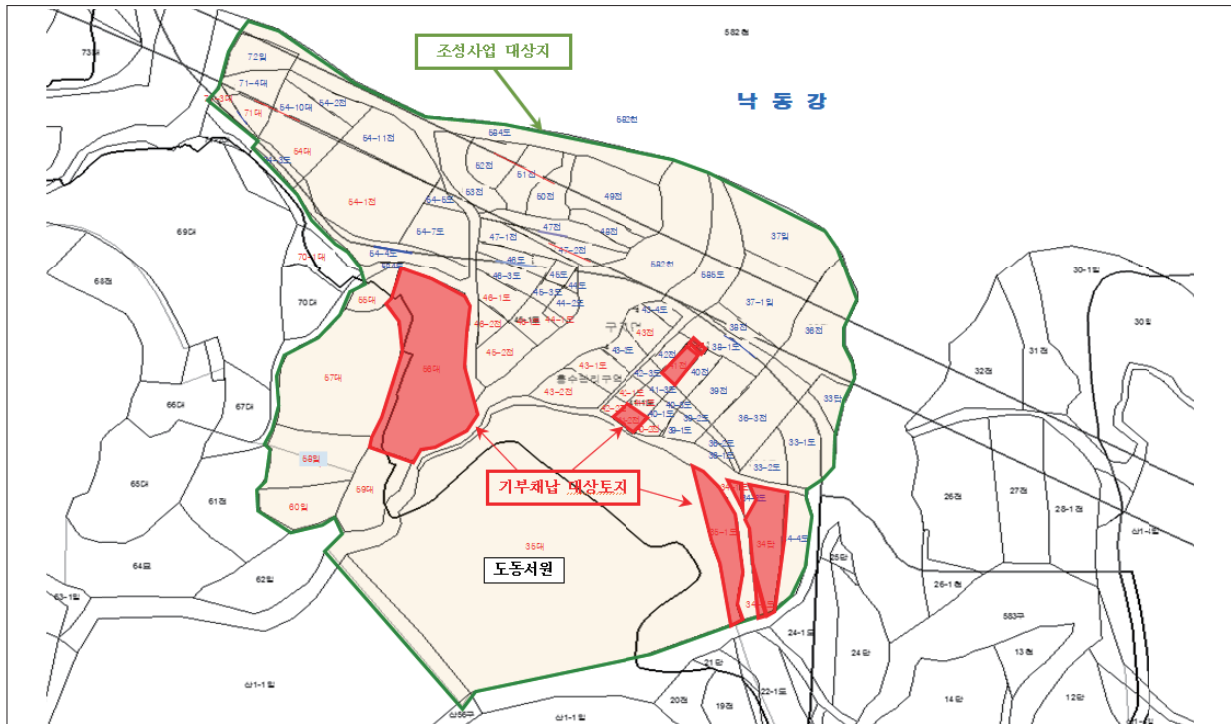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위 치 도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4번지 외 7필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4번지 일원



Ⅱ. 검토의견

2019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 화원·옥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여성의 평생교육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 아울러, 군유지인 단층의 물류창고 부지를 이러한 여성·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설화명곡역 역세권 지역개발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도동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320백만원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20백만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32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이자수익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19,891백만 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2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9년 제3회추경</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19</td><td>320 (기출연30억)</td><td>320</td><td>-</td><td>-</td><td>320</td><td>-</td></tr></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제3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9	320 (기출연30억)	320	-	-	320	-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제3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9	320 (기출연30억)	320	-	-	320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증가인구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 전국 최고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320백만 원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20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출연액	2019년 예산액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총 계	3,010	3,000	320	320	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3,010	3,000	320	32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없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19.10.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정기호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8. 1.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면영회 회장			2019. 6. 21~ 2023. 6. 20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길중	자동차보험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성제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동조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9. 6.21 ~ 2021. 6.20	
	비상임감사	임동화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9. 7. 1 ~ 재직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출연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재무현황 2019.10.1. 기준	자산	19,891백만원
	출연금	5,000백만원	3,010백만원	3,000백만원		부채	-
	지자체 지원액	5,000백만원	3,010백만원	3,000백만원		자본	19,891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3억2천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3억원, 대구은행 1천만원, 다산목민대상 본상 시상금 1천만원으로 합계금액 3억2천만원이며,
-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9년 장학기금 기 보유액 198억9천1백만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됨.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 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우선적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833,400	812,300	21,100
일반회계	계	824,000	803,000	21,000
	일반회계	824,000	803,000	21,000
특별회계	계	9,400	9,300	1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67	2,767	0
	의료급여기금	650	610	40
	기반시설	115	115	0
	치수사업	5,868	5,808	6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33,400	812,300	21,100	2.60
일 반 회 계		824,000	803,000	21,000	2.62
	지방세수입	172,298	165,698	6,600	3.98
	세외수입	35,199	32,954	2,245	6.81
	경상적세외수입	25,736	24,297	1,439	5.92
	임시적세외수입	9,463	8,657	806	9.31
	지방교부세	143,874	140,974	2,900	2.06
	조정교부금등	56,286	55,381	905	1.63
	보 조 금	285,926	277,576	8,350	3.01
	국고보조금등	199,379	194,902	4,477	2.30
	시·도비보조금등	86,547	82,674	3,873	4.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417	130,417	0	0.00
특 별 회 계		9,400	9,300	100	1.08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33,400	812,300	21,100	2.60
일 반 회 계		824,000	803,000	21,000	2.62
	일반공공행정	49,683	48,745	938	1.92
	공공질서및안전	13,155	13,073	82	0.63
	교육	11,617	11,058	559	5.05
	문화및관광	61,956	60,538	1,418	2.34
	환경보호	21,371	21,249	122	0.57
	사회복지	274,075	267,867	6,208	2.32
	보건	16,854	16,791	63	0.38
	농림해양수산	46,074	44,477	1,597	3.59
	산업·중소기업	2,971	2,871	100	3.49
	수송및교통	155,246	148,177	7,069	4.77
	국토및지역개발	58,104	56,935	1,169	2.05
	예비비	17,426	17,278	148	0.86
	기타	95,468	93,941	1,527	1.63
특 별 회 계		9,400	9,300	100	1.08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33,400	812,300	21,100	2.60
일 반 회 계		824,000	803,000	21,000	2.62
	인건비	79,667	79,569	98	0.12
	물건비	45,670	45,073	597	1.32
	경상이전	363,203	357,239	5,964	1.67
	자본지출	306,023	293,167	12,856	4.38
	시설비및부대비	279,461	267,831	11,630	4.34
	민간자본이전	15,920	15,211	709	4.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08	1,548	60	3.8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52	752	0	0.00
	자산취득비	8,282	7,825	457	5.84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6,839	6,780	59	0.88
	예비비및기타	22,588	21,162	1,426	6.74
	예비비	17,426	17,278	148	0.86
	반환금기타	5,162	3,884	1,278	32.91
특 별 회 계		9,400	9,300	100	1.08

5. 주요 내용

□ 예산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23억 원보다 211억 원(증2.60%)이 증가된 8,334억 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3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액된 8,2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시비 보조금 8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 3억 7천만 원,
현풍 경관광장 조성 실시설계비 4억 7천만 원,
군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천만 원,

- 실효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 및
각종 투자사업비 69억 원,
주요현안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다사읍사무소 앞 보도육교 설치 16억 9천 5백만 원,
화원 성산리 고분군 정비 8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1억 3천만 원,
화원, 논공 중앙시장 노후전선사업 9천 5백만 원,
새뜰마을사업(논공 하1리 약산마을) 4억 3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달성 교육문화 복지센터 27억 원,
가창 오리 및 유가 용리 급경사지 보강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 13억 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6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 7천만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변경분 반영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초과세입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19년 제3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기획 예산실	달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250	250	
회계과	군청사 냉난방기 설치(법무감사실)		27	27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배수설비 변경 공사		100	100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370	370	
정보 통신과	스마트 CCTV통합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예산성립전 사용)		225	225	
일자리 경제과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화원시장		70	70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논공중양시장		26	26	
	현풍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2018국비교부)		16	16	
	달성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예산성립전 사용)		130	13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3	223	109	
	마을기업 육성사업(예산성립전 사용)	50	110	60	
	구지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300	350	50	
환경과	이동화장실 임차료	54	67	13	
농업 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	80	30	
	유기동물 보호사업	95	100	5	
	동물등록 대행비	6	16	10	
청소 위생과	가로청소용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	69	79	10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42	53	11	
	재활용품선별장 장비 등 보수유지비	22	33	11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708	756	48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28	564	36	
공원 녹지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0	240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07	1,1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		200	2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195	195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916	716	△2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예산성립전 사용)	5,446	6,023	577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193	568	375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운영	964	1,000	36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	806	820	14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672	809	137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예산성립전 사용)	1,696	2,068	372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지원	241	290	49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512	1,973	461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221	221	
	국공립 하빈어린이집 개보수		230	230	
	어린이집 확충(신설) 민간위탁금	90	150	60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5	25	
	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	450	750	300	
	어린이집 확충(신설) 자산및물품취득비	60	100	40	
희망 지원과	아동수당지원	22,607	23,299	69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816	1,909	93	
교통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추진	248	290	42	
	현풍 북카페 두런두런 운영		51	51	
	의무보험 및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우편요금	157	196	39	
건설과	화원 성산리(20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화원 구라리(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0	60	
	논공 하2리 제실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300	
	논공 삼리리 9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건설과	논공 남리 57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논공 위천리 11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논공 삼리리 5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논공 금포리 146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논공 금포리 대진섬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논공 삼리리 74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다사 매곡리 다사주민자치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500	
	다사 서재리 39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0	30	
	다사 서재리 서재초등학교 남편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	30	
	다사 죽곡리 죽곡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	30	
	다사 세천리 276번지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	50	
	다사 매곡리(다사성당앞) 도로확장		1,000	1,000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1,000	3,000	2,000	
	가창 용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교항1리 1226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700	100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99	1,800	1,201	
	옥포 신당리 116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700	400	
	옥포 신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1,700	1,200	
	옥포 본리리 114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옥포 본리리 2187-1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옥포 본리리 766-1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본리리 2412-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건설과	옥포 본리리 80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본리리 2337-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옥포 강림리(공단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300	
	옥포 본리1리 96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200	
	옥포 교항리 2071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강림리 59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강림리 180-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옥포 간경리 84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간경리 50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간경리 64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옥포 간경리 미진이지비아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현풍 성하 3리(백조맨션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현풍 원교리 81-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현풍 중리 451-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현풍 중리 313-8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현풍 부리 19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현풍 성하리 416-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구지 창리 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70	
	구지 창리 490-1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구지 창리 598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구지 창리 329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하빈 현내2리(539-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	30	
	하빈 현내2리(571-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0	
	다사읍사무소 앞 보도육교 설치	1,900	205	△1,695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공사		100	1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안전 방재과	2019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예산성립전 사용)		28	28	
	폭염대피소운영 및 물품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46	46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779	4,579	800	
	차천 재해예방사업	800		△800	
	가창 정대리 534-1번지선 용계천 정비공사	100	60	△40	
	구지 도동리 91번지선 세천 정비공사	298	338	40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2018 ~ 2019년도 초과세입분 포함)	30	90	60	
도시과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식		470	470	
	논공읍 하1리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423	423	
도시 정비과	다사 문양리(814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2017년 조정교부금 재사용 포함)	280	280		
	가창 주리(699번지선) 농로 확포장공사	199	249	50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수리1지구)	66	270	204	
정책 사업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70	2,700	1,530	
문화 체육과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달성 100대 피아노(예산성립전 사용)	450	550	100	
	기타체육시설보수 및 설치공사	300	350	50	
	현풍 원오교 파크골프장 조성 미보상 토지 매입		55	55	
관광과	주요관광지 연말트리 설치		20	20	
	LED 전구조형물 설치		30	30	
	송해공원 부유조형물 설치		250	250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 토지매입	1,300	1,400	100	
	남지장사 광명루 긴급보수(2016~2018년조정교부금 재사용포함)		100	100	
	성산리 고분군 정비	830		△830	
	도동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분담금	50	60	1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증감	비 고
교육청 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출연	3,000	3,320	320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656	691	35	
	달성군청소년센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50	50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144	144	
하빈면	농업인 힐링센터 조성공사	298	318	20	

6.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23억 원 보다 211억 원(증2.60%)이 증액된 8,334억 원으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 시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 확보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꼭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9당초예산 및 1,2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관련예산 승인 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 및 확인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예산편성 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농업, 농업인, 협약금융기관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심의,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7조)
- 협약금융기관 및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안 제9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농업, 농업인, 협약금융기관의 정의 규정
- 안 제3조~제6조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 신청, 심의, 내용을 정함
- 안 제7조에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를 정함
- 안 제9조에 협약금융기관 및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 명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m²),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핸드폰

○ 신청내역

재배면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 포대, box, 망)	월급제 희망량	
			기간 (개월)	금액(천원)
			○월 ~ ○○월 (○○개월)	

위와 같이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20.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달 성 군 수 귀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노인세대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로 개정(안 제2조제6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와 그 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 계층에 추가
(안 제2조제7호, 제8호)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제6호에 노인세대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로 개정
- 안 제2조제7호, 제8호에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 그 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계층에 추가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제2조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노 인 ☐ 대리양육 세대 ☐ 가정위탁 세대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		☐ 소방 ☐ 기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6.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 로 사는 노인 세대
7. <신설>	7.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 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
8. <신설>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0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별표1〕에 소화기 항목 추가 (안 제18조)
-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항목 추가 (안 제21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 하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8조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별표1]에 소화기 항목 추가
- 안 제21조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항목 추가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4호 중〔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u><신 설></u>	1.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3. -----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 및 제18조 관련)

○ 가전제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 ℓ 이상	9,000
	300 ℓ 이상 500 ℓ 미만	7,000
	300 ℓ 미만	5,000
세탁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에어컨디셔너	264㎡형(80평)이상	8,000
	66㎡형(30평)이상	6,000
	66㎡형(30평)미만	3,000
T.V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복사기	높이 1m이상	7,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전기난로	2,000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 가구류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장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쇼파	1인용	3,000
	1인 추가시	1,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상(판)	모든 규격	2,000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책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5,000
책장(책꽂이)	120cm×180cm 이상	10,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침대	2인용(더블) 구조물	6,000
	1인용(싱글) 구조물	5,000
	2인용(더블) 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 매트리스	5,000
돌침대	1인용	15,000
	2인용	20,000
의자	대형(팔걸이 의자)	2,000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1,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장식장	120cm×180cm이상	13,000
	90cm×180cm이상 120cm×180cm미만	9,000
	90cm×180cm미만	3,00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3,000
문갑	120cm이상	3,000
	120cm미만	2,000
서랍장	6단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90cm×150cm미만	3,000

○ 기타 생활용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쌀통	모든 규격	2,000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0.5m이상)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장난감 (인형등)	10kg	2,000
	5kg	1,000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40cm×80cm이상	2,000
	40cm×80cm미만	1,000
캐비닛	90cm×150cm이상	5,000
	90cm×150cm미만	3,00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문짝, 창문	1㎡ 당	2,000
수족관	1㎡ 이상 1㎡ 당	6,000
	0.5㎡ 이상 1㎡ 미만	9,000
	0.5㎡ 미만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유리	1㎡ 당	2,000
항아리	대형 1개당 1㎡ 이상	5,000
	중형 1개당 0.5㎡ 이상 1㎡ 미만	2,000
	소형 1개당 0.5㎡ 미만	1,000
세면대	개 당	3,000
목재	kg 당	1,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변기	좌변기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	2,000
전기담요 등	전기장판	2,000
	옥매트(2인용)	6,000
	옥매트(1인용)	3,000
이불 등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물탱크(F.R.P)	1㎥ 이상	10,000
	1㎥ 미만	5,000
카펫	3.3㎡ 당	5,000
애완동물집	모든 종류	3,000
아이스박스	모든 종류	2,000
옷걸이	모든 종류	2,000
마대	20Kg 당	3,000
소화기	20kg 이상	18,000
	6.5kg 이하	5,000
	3.5kg 이하	3,000

- ☐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 폐가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한 경우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이 일부 없을 경우 유상수거를 실시함.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제4항)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부분 개정(안 제31조)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8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7조, 제20조, 제23조에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 안 제31조에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부분 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를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제한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4. (생략)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부결정) ①----- ----- ----- ----- 1.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0조(교부방법)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지방보조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23조(실적보고) ①~③ 생략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범 위 에 서-----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 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를 삭제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지방재정법」제1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6조의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고) <u>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6조(보고) <u><삭제></u>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민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2011.3.7.),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15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민법」제15조~제17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민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2011.3.7.),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5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인이 <u>무능력자</u> 가 될 때	4. ----- <u>제한능력자</u> -----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2조제3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제3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특별회계”란 군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u>계리</u> 할 필요에 의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 <u>회계처리</u>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7.12.21.)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와 구분하여 정비

(현행)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변경)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7.12.21.)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와 구분하여 정비
(현행)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변경)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 이 크 로 필 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2015.2.16.> 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 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하고자 함.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2015.2.16.> 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 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하고자 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 기관 이라 한다)” 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 를 “감정평가업자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u>영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u>	④----- -----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u>감정기관에서</u>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5조(사용허가)제3항 시장사용허가기간을 “2년 이내” 에서 “5년 이내” 로 수정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신규 작성

제7조(청문 등)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수정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4.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조항 삭제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제1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5조(사용허가)제3항 시장사용허가기간을 “2년 이내” 에서 “5년 이내” 로 수정
- 안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신규 작성
- 안 제7조(청문 등)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수정
- 안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4.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조항 삭제
- 안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제1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 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년” 을 각각 “5년”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6조” 를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제6조제1호” 를 “제6조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u>2년</u>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2년</u>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5년</u> ----- ----- <u>5년</u> -----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 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 6. (생략) <u><신 설></u>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 6. (현행과 같음) <u>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
제7조(청문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 가를 취소·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청문 등) ----- <u>제6조제1항</u> ----- ----- ----- -----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군수는 <u>제6조제1호</u> 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 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 <u>제 6 조 제 2 항</u>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명확성 제고 및 청문실시를 통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하고,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신설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제2항 중 “1개월 이내” 를 “2개월 이내” 로 수정

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신설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명확성 제고 및 청문실시를 통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하고,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신설
- 안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제2항 중 “1개월 이내” 를 “2개월 이내” 로 수정
- 안 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신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전통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2(상인회의 등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u>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2개월----- -----
<u><신 설></u>	<u>제11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u> <u>①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한 전통 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대여기간 변경(제7조 제1항 별표)

- 기본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 기존의 연속하여 대여 불가 항목 삭제

5.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여기간 변경(제7조 제1항 별표)
: 기본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기존의 연속하여 대여 불가 항목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별표]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납부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삭제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별표]를 따른다. [별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이용료/1대당</td><td>6,000원</td><td>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td></tr><tr><td>대여기간</td><td>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td><td>연속하여 대여 불가</td></tr><tr><td>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td><td>400원</td><td>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td></tr></table>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구입 시기</th><th>배상금액</th></tr><tr><td rowspan="4">유모차 분실</td><td>1년 이하</td><td>구입가격의 90%</td></tr><tr><td>1년 초과 2년 이하</td><td>구입가격의 70%</td></tr><tr><td>2년 초과</td><td>구입가격의 50%</td></tr><tr><td>2년 초과</td><td>구입가격의 50%</td></tr><tr><td>구성품 분실</td><td>불문</td><td>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td></tr></table>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배상금액</th></tr><tr><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td><td>없음</td></tr><tr><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td><td>소요비용의 50%</td></tr><tr><td>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td><td>500원</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대여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연속하여 대여 불가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별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이용료/1대당</td><td>6,000원</td><td>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td></tr><tr><td>대여기간</td><td>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td><td>삭제</td></tr><tr><td>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td><td>400원</td><td>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td></tr></tabl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분	내용	비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삭제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구분	내용	비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대여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연속하여 대여 불가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구분	내용	비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삭제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